##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67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이원택・윤준병・송옥주

문금주 · 서삼석 · 이병진

어기구 · 문대림 · 임미애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가 하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음.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항 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 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 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 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교육·홍보를 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 마.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 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 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 증은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 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시행"을 "수립·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 시기 ·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한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홍보 및"을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u>수립·시행</u> ) ① 농림축산식	의 <u>수립·변경</u> ) ①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혼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u>수립된 기본계</u>
	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	3 <u>품목, 대상</u>
<u>상 지역</u> 에 관한 사항	지역 및 상품 개발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u>시행에</u>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 (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수산부상관은 제1항에 따른 기</u>
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u>⑦</u>
<u>변경·시행에</u>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
<u>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u>
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2조의4</u> (재해보험 등의 심의)

- 1. 2. (생략)
- 3. 손해평가의 <u>방법</u>과 절차에 관한 사항

#### 4. ~ 6. (생략)

-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저 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 2. 재해보험 목적물의 <u>선정</u>에 관한 사항
  - 3. 4. (생략)
  - ② ~ ⑥ (생 략)
  - ①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u>농업인</u>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u>들</u>을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u>방법(농업재해에</u>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
<u>다)</u>
4. ~ 6. (현행과 같음)
세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1. <u>제2조의4</u> 각 호의 사항
2 <u>선정 및</u>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
<u> 적물의 확대</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7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
<u>보험</u>
<u>체</u>
들어야 한다.

⑧ (생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를 <u>확대하기</u>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 략)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손해평가인이</u> 공정하고 객관적인 <u>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u> 연 1회 이상 <u>정기교육</u>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현행과 같음)
-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 <u>(2)</u> -----
  - --<u>매년 확대하기</u>-----
  - ----**.**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따른 할증은 제외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5 -----
  - \_\_\_\_\_
  - -<u>손해평가인의</u>-----
  -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 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의 내용

⑥ (생 략) <u><신 설></u>

① (생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기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 략)

<u>으로 정기교육</u>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
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u>이 경우 보험가입</u>
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
였던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
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저	25조의	리2(농	어업	재경	해보현	il 사	업의	기
	관리)	1	농립	발축/	산식품	등부?	장된	간
	또는	해양	수산-	부장	관은	재	해년	己
	험사업	글을 .	효율	적으	로 2	추진	하기	7]
	위하여	다 다	음	각 .	호의	업.	무딓	<u>=</u>
	수행한	난다.						

- 1. ~ 3. (생략)
-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 5.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u>도입</u>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1. ~ 3. (현행과 같음)
4 <u>육성 및 재</u>
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
문성 제고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시범사업) ①
개발하
거나 도입하려는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u>교육·홍보를</u>
하여야 하고,